

住宅建設基準에 関한 規則

1979년 4월 21일

개정 1979. 8. 22 건설부령제235호
개정 1980. 6. 2 건설부령제265호
개정 1980. 7. 10 건설부령제266호
개정 1981. 3. 10 건설부령제292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재개발사업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건설하는 주택, 외국의 차관자금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국방 기타 국가의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대지와 아파트 지구 안에 있는 대지로서 건설부장관이 주변환경이나 도시 미관상 주택의 대지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독주택의 대지 : 8미터
- 연립주택의 대지 : 10미터
- 아파트 대지 : 50미터

제 3 조 (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1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81. 3. 1개정)

② 공동주택의 정면은 철도·고속도로·공장 기타 소음등의 발생원에 면하게 배치하여야 하는 아니된다. ('80. 6. 2 삭제, '81. 3. 10 신설)

제 4 조 (시설 등의 제한) ① 공동주택에는 건축설비·대피시설·주차시설·주택관리업무시설·체육시설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소 이외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 중 상가 또는 슈퍼마켓과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80. 6.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대피시설 및 체육시설은 지하층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0. 6. 2 신설)

③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관리업무용의 시설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지의 조건과 토지이용 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거시설의 주거편익에 직접 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단위평면계획) ① 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단위 평면계획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당 또는 세대당 전용 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6. 2 단서신설)

② 전용면적 11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에는 세대당 또는 호당 2실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아니된다.

제 6 조 (복도 및 계단의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의 복도 및 계단(비상계단을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7 조 (벽체 등의 구조) 공동주택의 계벽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그 두께가 15센티미터(시멘트모르터·회반죽 또는 석고프라스타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일 것.
- 블록조·벽돌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그 두께가 22센티미터(시멘트모르터·회반죽 또는 석고프라스타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일 것.
- 피·씨판인 경우에는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일 것.
- 기타의 구조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차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일 것. ('80. 6. 2, '81. 3. 10 개정)

제 8 조 (난간의 구조) ① 장독대 또는 가사용품 등의 저장소로 사용할 발코니의 난간은 장독대 등을 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발코니·계단 및 복도의 난간과 출입문이 있는 옥상의 난간은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조	기준
바닥마감면에서의 높이	1.1미터(옥내계단의 난간인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일 것.
간살의 간격(간살구조인 경우에 한한다.)	10센티미터 이하일 것.

('81. 3. 10 개정)

제 9 조 (진개수거 시설) ①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다크스트류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인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2세대당 1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2. 복도식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3세대당 1개 소 이상으로 하되, 각 세대의 현관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위치에 1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스트슈트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다스트슈트의 상단부에는 동력·태양열에너지 또는 풍력으로 작동하는 악취 배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창·문 및 낙수구의 규격 등) 주택의 창 및 문과 평지붕에 설치하는 낙수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 상세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한 것 이어야 한다. 다만, 창 및 문에 대하여는 특수공법에 의한 구조로서 건설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6. 2 단서신설)

제 11 조 (마감재료) ① 주택의 각 부위별 마감재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건축사법 제 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
3. 조립식 공법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공법으로 건축하는 주택

제 12 조 (열사용량계기의 설치)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배될 수 있는 공법으로 하고, 각 세대마다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하거나,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난방열량 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의 공동주택의 보이라시설을 이용하여 추가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동일 보이라 시설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전부가 세대별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0. 7. 10, '81. 3. 10 개정)

제 13 조 (전기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은 4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적산전력계를 각 세대의 현관벽의 외측에 설치하거나 계단실 또는 복도에 접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단지 안의 옥외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로이하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80. 6. 2 개정, '81. 3. 10 단서신설)

제 14 조 (도로 등) ('80. 6. 2 개정)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폭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80. 6. 2 개정)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	도로의 폭(미터)
300세대 미만	6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
1,000세대 이상	18

②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의 도로의 폭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도로의 폭은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0. 6. 2 개정)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	도로의 폭(미터)
100세대 미만	4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6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
1,000세대 이상	18

③ 도로와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도로의 막다른 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81. 3. 10 개정)

④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의 폭 12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되, 보도면은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0. 6. 2 개정)

⑤ 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포장하여야 하고, 보도는 보도블록, 석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81. 3. 10 개정)

⑥ 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의 주현관 입구 까지의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상·하수도 시설)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수도계량기와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엌, 욕실 및 세탁장 등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80. 6. 2 개정)

② ('80. 6. 2 삭제)

제 16 조 (통신시설) ① 시의 행정구역안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 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안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교환시설을 하거나 공중전화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통신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

2. 3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초

파하는 500세대 이내마다 1 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제 17 조 (가스공급시설) ① 도시가스 또는 엘피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마다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취사·난방 겸용의 연탄아궁이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하나의 단지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 계획에 따라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 (자동차 정류소) ('81. 3. 10 삭제)

제 19 조 (우편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500 세대 이내마다 1 개의 비율로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우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0 조 (보안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의 도로의 양측에는 서로 엇갈리게 하여 길이 50미터 이내마다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0. 6. 2 개정)

제 21 조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30평방미터 이상, 5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평방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500세대 이내마다 1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65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2 조 (유치원·탁아소)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0 세대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확보된 대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단지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안에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 (공공시설) 3,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동사무소·파출소 및 우체국을 건축할 대지를 각각 150평방미터 이상씩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의무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 24 조 (어린이 놀이터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그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평방미터에 100 세대를 초과하는 3 세대 이내마다 3.3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어린이 놀이터는 1개소의 면적이 150평방 미터 이상이고, 폭이 9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거실이 있는 외벽면으로부터 5 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놀이터의 주변에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차폐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료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여 의료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판매용 건축물의 건축 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이를 의료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 소 이상

2.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1개 소 이상.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의원 또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공중목욕탕)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000세대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는 공중목욕탕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공중목욕탕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공중목욕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체육시설) ①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165평방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300세대이내마다 10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학교 및 공공운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정구장(2 면 이상의 것을 말한다)·배구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의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운동장에 정구장·배구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8 조 (집회소) ('81. 3. 10 삭제)

제 29 조 (비상저수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세대당 1 톤(비상지하수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 톤) 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30 조 (녹지시설 등)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녹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 안에 휴게시설을 하여야 한다. ('81. 3. 10 개정)

1. 주택의 규모가 1,0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 개소, 1,0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세대를 초과하는 1,000세대 이내마다 1 개소의 비율로 가산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 개소의 휴게소에는 5 인용 진의자 5 개 이상을 설치하고, 휴게소의 2 분의 1 이상의 면적에 잔의 및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단지안의 도로 또는 통로의 양측 및 휴게소에는 단

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 (텔레비전 공청시설)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텔레비전 공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2 조 (공동저탄장) 연탄온돌 또는 연탄보일러식 난방방식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층별로 세대별로 구획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용면적 안에 저탄용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 조 (노인정)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세대 이내마다 10평방미터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3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노인정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5평방미터 이상의 오락실

2. 장기 및 바둑 등의 오락시설

3. 남·여용 각 1개소 이상의 변소 및 세면시설

4. 1개소 이상의 급수시설

제 34 조 (판매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상가 및 슈퍼마켓 등의 판매시설을 당해 주택준공시까지 건설하여 주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별표 6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6. 2 단서신설)

② 제 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료품·문구류·다파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판매장·이미용원·약국 및 병·의원 등을 주된 용도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개업·주점 및 유홍음식점의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 조 (안내표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때에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1. 3. 10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197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 17조 제 2항을 삭제한다.
2. 제 19조 중 제 3항 내지 제 8항을 각각 제 4항 내지 제 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2항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서에 기재할 주택건설사업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별표 1]의 본표를 삭제하고, [부표 1]을 [별표 1]로

한다.

4. [별표 4]의 복리시설 중 “오물 및 진개의 수거시설”란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 중인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 1항 및 [별표 4]를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에 대하여 제 3조 제 2항 및 제 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별표 1]

단위 평면계획기준

실별	기준
거실 (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80. 6. 2 삭제) 2. 최소폭은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침실	1. 1실의 면적은 5.7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80. 6. 2 개정) 2. 최소폭은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엌	1 실의 면적은 4.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80. 6. 2 단서삭제)
욕실 (변소겸용)	1 실의 면적은 3.2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 상세도에 의한 유니트バス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 소	(80. 6. 2 삭제)
현 관	(81. 3. 10 삭제)
발 코 니 (발코니를 설치하는경 우에 한한 다.)	유효폭은 1.1미터 이상으로 한다.
창 고 (창고를 설 치하는 경 우에 한한 다.)	1실 또는 1개소의 면적은 3.0 평방미터 미만으로 한다.
기 타	설계도에 따른다.

[별표 2]

복도 및 계단의 기준

구 분	기 준
계단의 유효폭	1.2미터 이상
계단의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계단의 단높이	18센티미터 이하
계단참의 유효폭	1.3미터 이상이고 계단의 유효 폭 이상
복도의 유효폭	1.4미터 이상

[별표 3]

다스트슈트의 규격 및 마감 등의 기준

구 分	마감규격 (미리미터)			마 감 등
	폭	길 이	높 이	
유 트	5층이하의 주 택	500 이 상	600 이 상	내부면은 진개 가 결리지 아니 하도록 평탄하 게 마감하여야 한다.
	6층이하의 주 택	600 이 상	700 이 상	
저 장 소	5층이하의 주 택	1,400 이 상	2,000 이 상	벽과 바닥은 방 수리처 및 청소 용 급배수설비 를 하여야 한다.
	6층이하의 주 택	1,400 이 상	3,000 이 상	1,200 이 상
진 입 투 개 구				전설부장판이 정 하여 공고하는 표준 상세도에 의거하거나 기 타의 공법으로 악취가 주거내 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기밀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별표 4]

내 부 마 감 재료

다음 표의 재료 중에서 선택한다.

다만, 품질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실 별	부 위	마 감 재료
현 관	천 정	난연성보드류(건축법의 규정에 의 거 의무화된 경우에 한함) 합판 또는 평스레트위 벽지바름 모 르터위 페인트칠 다만, 거실의 천정과 연속된 경우 에는 거실에 충할 수 있다.
	벽 체	모르터위 페인트칠 다만, 거실과의 사이에 칸막이 벽 이 없는 경우에는 거실에 충할 수 있다.
	결례받이	합성수지 제품 모르터위 페인트칠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인조석 현장갈기 아스타일 붙이기
거 실	천 정	난연성 보드류 합판 또는 평스레트 위 벽지바름 모르터 위 페인트 또는 벽지 바름
	벽 체	모르터 위 벽지 바름 모르터 위 페인트칠
	결례받이	목재널판 합성수지
	바 닥	무늬목 후로링보드 아스타일류 붙이기 모르터 마감(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 로 비닐제품 또는 카펫트 깔기)
침 실	천 정	합판 또는 평스레트 위 천정지 바름 모르터 위 천정지 바름
	벽 체	모르터 위 벽지 바름
	결례받이	징두리벽 : 벽타일 붙이기 굽도리 돌림
	바 닥	모르터위 페인트칠 모르터 마감(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 로 비닐제품 또는 카펫트 깔기)
부엌	천 정	평스레트 위 페인트칠 모르터 위 페인트칠 다만, 식당겸용 또는 거실 겸용인 경우에는 거실에 충할 수 있다.
	벽 체	벽타일 붙이기 다만, 식당 겸용 또는 거실 겸용인 경우에는 거실에 충할 수 있다.

실별	부위	마감재료
	결례받이	식당 부분은 거실에 준함.
	바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아스탁일류 붙이기 다만, 식당 겸용 또는 거실 겸용인 경우 식당 부분은 거실에 준할 수 있다.
욕실 및 변소	천정	평스레트(알미늄 고정못을 사용하고 줄 눈조이너 시공한다) 위 페인트칠 선라이트
	벽체	벽타일 붙이기 모르터 위 페인트칠(정두리벽을 제외함)
	바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계단실 및 복도	천정	모르터 위 페인트칠
	벽체	모르터 위 페인트칠
	결례받이	합성수지 제품 모르터 위 페인트칠
	디딤판	인조석 현장갈기 모르터 마감
	바닥	인조석 현장갈기 모르터 마감
다용도 실	천정	모르터 위 페인트칠
	벽체	모르터 위 페인트칠
	결례받이	모르터 위 페인트칠 합성수지
	바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인조석 현장갈기
발코니	천정	모르터 위 페인트칠 제물치장 콘크리트 위 페인트칠
	결례받이	모르터 위 페인트칠
	바닥	인조석 현장갈기 바닥용 타일 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 * 주) 1. 천정 및 벽체(결례받이를 포함한다.)의 모르터는 석고프라스다로 칠음할 수 있다.
 2. 욕실 및 변소의 경우 전설부장판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 상세도에 의하여 유니트バス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별표 5]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그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조(높이 2미터 이상인 3인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 이내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 조수 이상
미끄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높이 2미터 이상, 상계판의 넓이 2평방미터 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 이상, 촉지판의 길이 0.6미터 이상, 활주면 2개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철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조(대, 중 및 소형의 철봉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 조수 이상
모래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네, 미끄럼대 및 철봉의 주변에는 두께 0.3미터 이상
씨이소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 3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산정한 조수 이상
공중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수세식 공중변소(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및 세면기 1개 이상을 갖춘 것) 1개 이상
음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의 놀이터마다 음수기 1개 이상
진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의 놀이터마다 5인용 진의자 6개 이상

[별표 6]

판매시설의 설치기준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	판매시설의 종류	판매장 건축물의 규모 등	시설기준
100세대 이하	상가	세대당 2평방 미터	시장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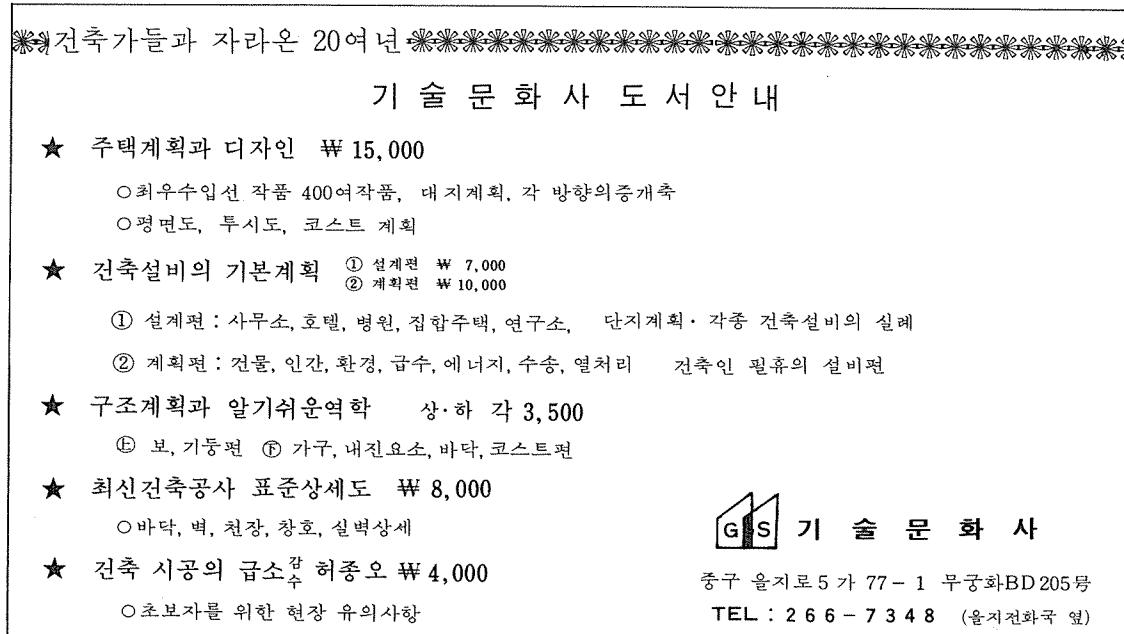
상 1,000 세 대 미만		이상 4 평방미터 이 하로서 5 층 이하, 다만, 판매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 분의 면적은 예외로 한다.	규정에 의한다.
1,00세대 이 상, 5,000세 대 미만	종합상가 (슈퍼마 켓 또는 백화점)	연면적 2,000평방미 터 이상 8,000 평방 미터 이하로서 5층 이하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다.
5,000세대 이 상	소매시장	연면적 3,000 평방 미터 이상 15,000평 방미터 이하로서 5 층 이하의 소매시장. 다만, 연면적 5,000 평방미터 이하의 상 가 또는 종합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7]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종 류	설 치 기 준
지구안내판	5개 이상의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와 연결되거나 이를 통과하는 잔선도로 변마다 설치한다.
단지방향 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인 경우에는 단지입구와 연결된 잔선도로 변에 설치한다.
단지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인 경우에는 단지입구마다 설치한다.
동호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는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81. 3. 10. 신설)



謝過말씀

삼가 全회원任께 謝罪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三月号(通卷144号)發刊이 遲延되어 会員任께 本意아닌 累를 끼쳐드려 大端히 悚懼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지 辭明말씀을 드리자면 P O O의 記事作成上誤謬와 編輯上의 差跌로 因하여 再印刷過程을 거쳤기 때문인데 다음호부터는 絶對로 이러한 前轍을 밟지 않도록 格別히 留意하겠사오니 会員여러분의 깊은 理解와 倍前의 協助를 繫曲히 付託드립니다. (出版事業部)